물 품 공 급 계 약 서

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-1 주 식 회 사 원익아이피에스 대 표 이 사 이 문 용

간._____

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9-11 리더스빌딩 11층 주 식 회 사 글로벌소프트 대표이사 김 경 탁

을:----





물 품 공 급 계 약 서

공급받는자: (주)원익아이피에스 (이하 "갑" 이라칭함)

공 급 자:㈜글로벌소프트 (이하 "을"이라칭함)은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매계약을 체결한다

제 1 조 (목 적) 본 계약은 물품(첨부견적제품)을 공급함에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EA계약을 하고 EA계약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계약내역 및 금액)

- (1) 계약내역은 물의 별지 견적서에 일하여 본 계약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.
- (2) 계약기간은 2012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- (3) 총 계약금액은 삼억팔천백만원정(₩381,000,000) 으로 한다. (VAT별도)
- (4) 3년분할로 지불하고 매년 지불금액은 일억이천칠백만원정(₩127,000,000) 으로 한다. (VAT별도)
- (5) 원익아이피에스의 매년 지불금액은 팔천구백삼십만원정(₩89,300,000) 으로 한다. (VAT별도)
- (6) 총계약 수량은 PC 498대이고 원익아이피에스가 380대, 원익머트리얼즈가 118대이다.
- (7) 납품에 대한 운임 기타 납품 완료하기까지의 제 비용은 "을"의 부담으로 한다.
- (8) 계약기간 이후 재계약은 고객의 신택사항으로 한다
- (9) 본 계약의 첨부견적서에 기재된 급액은 "갑"과 원익머티리얼즈에게 매년 청구되는 금액의 총합을 의미하며, "갑"은 견적서 금액 중 본 규정 제5항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.

제 3 조 (납품기한 및 납품장소)

(1) 납품기한 : 발주 후 최대2주 이내

(2) 납품장소: "갑"의 지정장소

제 4 조 (성능 및 기능보장)

(1) "을"은 납품시 견적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품의 사양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미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제품을 개선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물품검수)

- (1) 납품된 물품은 "갑"이 검수하며 이에 합격함으로써 납품완료로 한다.
- (2) "을"은 검수시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기타의 하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교체하거나 보완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"을"이 부담하여 책임을 진다.

제 6 조 (대금지급)

- (1) 물품대금은 "을"이 계약물품을 완납하고 "갑"이 물품을 검수완료 후 "을"의 청구에 의하여 협의 후 지급키로 한다.
- (2) 전항의 규정에 따른 "갑"의 대금지급의무는 본 계약서 제2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PC 수량 중 380대분에만 한정되며, 원익머티리얼즈의 분량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. 또한 본 계약상 "갑"과 원익머티리얼즈는 "을"에 대한 별개의 계약당사자로써 상대방의 어떠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연대책임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제 7 조 (권리의무의 양도금지)

"을"은 "갑"의 승인없이 본 계약의 권리,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수 없다.

제 8 조 (분쟁해결)

- (1)본 계약에 의한 분쟁 발생시 분쟁해결은 "갑"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- (2)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"갑"과 "을"이 합의로서 결정하고,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

제 9 조 (계약서 보관)

"갑"과 "을"은 성실하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.

Cont Car

2012 년 12 월 28 일

"갑 " 주 소 :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

업 체 명: (주)원익아이피에스

대 표:이문용

"을" 주 소 :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9-11 리더스빌딩 11층

업 체 명:(쥐)글로벌소프트∜

대 표: 김 경 탁